

소비자피해구제신청서

신청인 신OO

피신청인 공공아이핀센터 외 3

한국소비자원장 귀중

소비자피해구제신청서

신청인 신OO
 서울 서대문구
 전화 : 02-000-0000
 이메일 : 000@000.000

피신청인 1. 공공아이핀센터
 서울 종로구 종로대로 209 (세종로) 행정자치부

 2.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여의도동) NICE신용평가정보(주)
 대표이사 심의영

 3. 서울신용평가정보
 서울 마포구 토정로 144(상수동, 건양사빌딩)
 대표이사 주성도

 4.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대표이사 최범수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 공공아이핀센터는 신청인에게 아이핀 유출(부정발급) 여부를 통지하라.
2. 피신청인 공공아이핀센터와 나이스신용평가정보(구 한국신용평가정보)는 신청인의 아이핀 가입정보, 웹사이트 이용목록 등 신청인의 아이핀과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라.
3. 피신청인들은 향후 아이핀 발급 사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를 정지하라.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공아이핀센터와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서 아이핀을 발급 받아 사용하던 중 2015. 3. 19. 아이핀을 폐기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

피신청인들은 아이핀 발급기관이고, 특히 피신청인 공공아이핀센터는 75만건의 아이핀이 부정발급 되는 사고의 초래한 기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행정자치부는 2015. 2. 28. ~ 2015. 3. 2. 09:00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아이핀시스템에서 75만건의 아이핀이 부정발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공공아이핀 정상발급 절차를 우회(프로그램 취약점 이용)하여 아이핀을 대량으로 부정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정발

급 받은 아이핀 중 12만 건이 3개 게임사이트의 신규 회원가입, 기존 이용자 계정 수정·변경 등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금번 사건을 경찰청에 긴급히 수사 요청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갑 제1호증).

또한 아이핀 부정발급 과정에서 다른 여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통해 유출된 76만4,425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갑 제2호증).

3. 문제점

가. 유출 미통지

피신청인 공공아이핀센터는 신청인에게 아이핀 유출(부정발급) 여부를 통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신청인 공공아이핀센터는 2차 피해가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나.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핀 발급 가능

아이핀 부정발급 과정에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75만여개가 이용되었음이 알려졌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전 세계로 유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하여 아이핀을 발급하는 현 시스템 하에서는 정보 주체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핀이 발급되는 금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유출 통지 촉구와 개인정보 삭제 및 처리 정지 요구

가. 피신청인 공공아이핀센터의 유출 통지 의무 불이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0조는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아이핀 부정발급 사건은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3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부정발급한 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아이핀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아이핀센터는 2차 피해가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유출 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유출 통지는 2차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공공아이핀센터가 적절한 통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상황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공공아이핀센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피신청인 공공아이핀센터와 나이스신용평가정보(구 한국신용평가정보)가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아이핀 가입정보, 웹사이트 이용 목록 등 신청인의 아이핀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피신청인들의 아이핀 발급 사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특정 사이트에만 접속이 가능한 일반 아이디와는 달리, 아이핀을 이용하면 신규서비스 이용을 비롯하여 사용자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 접속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너무나 위험한 인증수단입니다.

신청인은 더 이상 아이핀을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만, 신청인이 아이핀을 단순히 폐기한다고 하여 아이핀이 유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금번과 사태와 같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하려는 월천적으로 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신청인들은 향후 아이핀 발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정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5. 결론

이와 같이 피신청인들의 위법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악용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침해의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5. 3. 19.

신청인 신OO

한국소비자원장 귀중